

대한민국 검찰과 미합중국 법무부 간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 및 협력을 고려할 때, 유효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형사집행이 양 국가의 효율적 시장 운영과 국민 경제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고,

카르텔 형사집행 활동에 관한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의 협력 및 조율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으로 이어질 것임을 인식하며,

카르텔 형사집행 및 정책에 관한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의 원활한 소통이 양 기관의 관계를 증진 및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본 양해각서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의 의사를 표명한다.

제 1 절 협력 및 조율

1.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각 관할 내 반경쟁적 행위의 적발 및 카르텔 형사법규 집행에 협력하는 것이 양 기관의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함을 인식한다. 본 양해각서에서 이러한 법률은 (i) 미국 법무부의 경우, 셔먼법 (15 U.S.C.§§ 1-7)의 비합리적 거래 제한 부분 및 그 개정사항, (ii) 대한민국 검찰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사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위 법률들의 효과적인 적용을 도모하고 각 기관의 카르텔 형사집행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며, 이는 각 기관의 관련 법제 및 중요한 이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

2.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동시에 형사집행 활동에 착수한 경우, 각 기관은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의 형사집행 활동을 조율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형사집행 활동을 함에 있어 자국의 관련 법체계 및 중요한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 카르텔 형사집행 당국의 법집행 목적과 중요한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4.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적용되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각 기관의 필요와 재량에 따라, 상대국 영토 내의 행위를 포함하는 카르텔 형사 수사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 대한민국 검찰 또는 미국 법무부는 각자 적용을 받는 다른 협정, 조약, 약정 또는 관행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을 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6.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카르텔 형사집행 및 정책에 관한 기술 지원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양 기관의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함을 인식한다. 각 기관이 합리적으로 가용한 자원에 따라, 이러한 계획에는 각 기관이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협력의 형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절 비밀유지

1.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의 준거법에서 소통을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의 이해와 상충될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음을 이해한다.
2. 본 양해각서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간에 정보가 전달된 경우, 이를 수신한 기관은 적용되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유된 보안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각 기관은

적용되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를 반대하여야 한다.

제3절 소통

1.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형사 정책의 변경과 중대한 법안을 포함하여, 각 관할 내의 카르텔과 관련된 주요 형사정책 및 집행의 개선사항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합리적으로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카르텔 형사법규의 집행에 대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자 한다.
3. 각 기관은 본 양해각서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요청’에는 요청의 사유 및 그 협의의 신속을 요하는 절차상의 기한 또는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에 응하기로 한다.
4.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각자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한다.
5. 본 양해각서에 따른 소통은 실무자 또는 고위직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수단 (유선전화, 이메일, 영상회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6.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담당자들은 정보 공개 및 비밀유지 관련 현행법과 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카르텔 형사법규 관련 집행 현황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제4절 일반 규정

1.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양해각서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본 양해각서의 시행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권을 유보하며, 본 양해 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현행법, 협정 또는 조약을 수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또는 미국의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3.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한 제반 의문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본 양해각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검찰

윤 석 열

장소 : 대한민국 서울
일시 : 2020. 11. 18.

미국을 위하여
미국 법무부

마칸 델라힘

장소 : 미국 워싱턴 D.C.
일시 : 2020. 11. 17.
